

본 정보지는 육계자조금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모든 육계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계자조금

2010. 12

자조금소식 2010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전남, 경기, 경남에서 실시

외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재발 방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실적 2010년 육계자조금 납부실적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Korea Poultry Board

육계자조금 호소문

하림은 더 이상 국가 정책사업인 육계자조금사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육계자조금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육계농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계육협회를 전면에 내세운 하림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육계자조금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육계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하림과 한국계육협회는 육계농가와의 상생을 말로만 외칠 뿐 오히려 농가들을 소작농으로 치부해 버리는 한편 불공정한 계약서를 앞세워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농가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육계자조금 자체를 부정하는 일련의 행동 등이 과연 육계농가들과의 상생을 외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말인가?

이에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개최한 제2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한국계육협회의 해촉안을 승인시킨 바 있다.

비단 하림뿐 아니라 한국계육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계열업체들도 육계자조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큰 문제다.

계열업체를 비롯하여 업계에 양심있는 지도층들은 지금의 사태를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된다. 과연 무엇이 농가를 위하는 길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림을 필두로 계열업체의 육계자조금사업에 대한 방해가 계속 되는 한 우리 육계농가들이 살아갈 길은 더욱 막막해 질 것이다.

하림은 육계자조금사업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농가의 사육제경비 현실화를 통해 생산에만 전념토록 해야

대한양계협회, 국회토론회에서 계열주체에 강력히 촉구

2010 / 12 · 3

대한양계협회는 계열주체의 불공정한 위탁사육계약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먼저 사육제경비의 현실화를 통해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2월 15일 어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하림과의 ‘끝장 토론’에서 현재 농가와 계열주체가 맺고 있는 위탁사육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농가의 사육제경비를 현실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에서는 농가와 계열주체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끝장토론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부각된 육계사육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위탁사육 계약서 불공정 어부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안성) 주최로 ‘육계계열화사업, 그 해답을 모색하다’란 주제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축산경제원구원 노경상 원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양계협회 이준농 회장과 이홍재 부회장, 하림 김홍구 회장과 정분성 전무가 양측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노경상 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계열화 사업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것으로, 계열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육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으로 안다”며 “끝장 토론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서로간의 갈등을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법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 노경상 원장은 토론의 핵심 포인트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되어 지는 계열화 농가에 대한 계약방식의 문제 ▲농가소득 측면에서 육계 계열화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계열화 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 ▲글로벌 시대에서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현재 하림이 시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하에서는 다른 농가와의 사육성적 비교를 통해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가간의 불신이 조장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2000년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한 이후 농가의 생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료요구율이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하림 정문성 전무

양측 상대평가방식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하림이 농가와 맺고 있는 위탁 사육방식인 상대평가에 대해 대한양계협회와 하림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한양계협회의 이홍재 부회장은 “현재 하림이 시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하에서는 다른 농가와의 사육성적 비교를 통해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가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병아리와 사료품질이 농가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육계농가 중 97%는 현재 계열주체와 맺고 있는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육경비부분에서는 98%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육제경비를 현실화해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림의 정문성 전무는 “2000년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한 이후 농가의 생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료요구율을 보면, 상대평가를 도입하기 전인 1997년에는 평균 2.0 이상이던 것이 2009년을 기준으로 평균 사료요구율이 1.6을 기록해 1997년도 대비 0.39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지금의 계열화 사업에서 하림은 지금껏 자신들이 잘한 것만 주장하고 있지 약자인 농가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육관계가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하림은 현재 미국식 계열화를 벤치마킹해 이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국가규모나 농가 규모로 봤을 때 미국식 계열화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식 계열화를 한다면서 미국에는 약자인 농가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은 왜 도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림의 김홍국 회장

은 “상대평가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절대평가에서는 농가가 병아리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는 반면 상대평가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병아리나 사료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회사로 돌아오므로 사료와 병아리의 품질을 균일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화 사업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여부 설전

육계계열화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하림의 정문성 전무는 “하림은 그 동안 수직계열화 사업을 통해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위험요소를 흡수함으로써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수급불안을 해소해 투기성이던 닭고기 사업을 안정된 닭고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하며 “실제로 수직계열화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94년 사육농가의 연 평균 조수익 2천500만원에서 2010년에는 1억600만원으로 4.2배 증가해 이는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약 4천600만원보다 2배가 넘고 사육 규모면에서도 1994년 2만5천수에서 현재는 5만5천수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홍재 부회장은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조수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근로자의 경우 연평균 소득액이 모두 순소득이지만 농가의 조수익은 시설비, 사육제경비, 인건비 등이 모두 빼져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계열주체, 농가와 상생 의지 안보여

대한양계협회는 계열화 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대해 농가와 계열주체 간의 상생을 역설했다. 이준동 회장은 “농가들은 그동안 계열주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3~4개월간 사육비도 받지 않은 채 그들을 도와주는 등 지

금의 계열화 사업이 안정기에 진어 든 것은 농가들의 희생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하림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은 채 정부에서 1천 200억의 정책자금을 3~4%의 이자로 빌려 이를 다시 농가에게 7.5%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고 수입 닭고기를 가장 많이 쓰는 등 농가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계협회의 주장에 대해 하림의 김홍국 회장은 “지난 10년간 하림이 얻은 이익은 720억으로 이는 낡은 한 마리당 35원의 이익을 본 것이고, 예전의 개별사육에서는 사료, 병아리 판매와 닭을 가공해 판매한 것에서도 이익이 창출되었는데 계약사육으로 바꾼 이후에는 오히려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히며 “오히려 지난 10년간 하림이 수당 평균 35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동안 농가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수당 14.5원에서 250원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3~4%의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을 받아 농가에게 7.5%로 빌려주며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농가에게 빌려줬다는 것은 감사에서 바로 걸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정책자금을 받아 HACCP, 도계장 신축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농가에게 정책자금이 흘러 들어간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입 닭고기를 가장 많이 쓴다는 지적에 대해 “하림이 수입 닭고기를 가장 많이 쓴다는 것은 수출입 통관조사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입 닭고기를 쓰는 것은 구색 맞추기를 위한 것이며 그나마도 전체에서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림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축공제보험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양계협회 이준동회장은 “농가들이 질병,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냈을 때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가축소득공제보험은 현재

정부에서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부분에 대해서 하림이 80%, 농가가 2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병아리와 사료비에서 공제해서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하림의 정문성 전무는 “우리는 정부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50%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80%를 지급하고 농가에게는 20%의 보험금만 부담시킨다”며 가축공제보험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위해 농가와 계열주체간 소통 필요

FTA 등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홍재 부회장은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간에 쌓여 있는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식 수직 계열화를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농가들이 계열주체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평계열화 사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논산에서 육계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규 씨는 “하림에서는 연금적립금이 농가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하림과 3년 이하의 위탁사육을 하게 되면 연금적립금을 한푼도 받을 수가 없다”며 “연금적립금은 분명히 농가의 것이라 했는데 왜 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림의 정문성 전무는 “연금적립금은 하림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육비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3년이란 기간을 설정한 것은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현재 3년 이후에는 연금적립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협의회와 논의하여 차후부터는 3년 이상 위탁사육을 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100%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
하림은 농가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
들의 이득만 챙기고 수입 닭고기를 가장 많이 쓰는 등
농가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우리가 수입 닭고기를 쓰는 것은 구색 맞추기를
위한 것이며 그나마도 전체에서 1% 정도밖에 차지하
지 않는다”



하림의 김홍국 회장



2010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전남, 경기, 경남에서 실시 구제역으로 인해 경북, 충청, 제주 교육은 모두 연기

육계자조금 활성화 방안과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이 전라북도 지역에 이어 전남, 경기도, 경남 지역에서 실시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 까지 나흘간 나주, 함평 등 전라남도 지역과 포천, 안성 등 경기도 지역, 29일에는 경남 고성 지역 육계농가들을 대상으로 2010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7일 전북지역에서 시작된 이번 순회 교육은 경상남도 고성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순회교육은 육계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양계산업의 안정화와 FTA 등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양계(질병 및 방역)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전국의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23일 대한양계협회 전라남도지회에서 진행된 전라남도 첫 번째 교육인 나주교육에서는 나주, 영암, 화순 등에서 많은 육계농가들이 참석하였고 다음날인 24일에는 함평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남지역 두 번째 교육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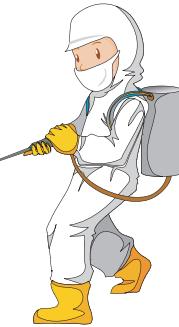
되었다. 전북지역에 이어 전남지역에서도 많은 육계인들로 교육장이 가득 들어차 이번 순회교육에 대한 육계인들의 높은 열의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이후 경기도 지역 교육은 25일과 26일 양일간 각각 포천 용정결혼회관과 안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었고 29일에는 고성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상남도 지역 첫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각 도청의 축산담당 공무원들이 정부가 실시하는 양계관련 정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 농가들에게 설명했고 양계관련 전문가들이 AI 등 육계질병 및 방역 대책에 대한 강의가 계속되었다. 이어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육계자조금에 대한 홍보와 거울 향상 방안, 내년에 설립 예정인 육계조합,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해 농가들에게 보고했다.

한편, 지난 11월 17일 실시된 전북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총 13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이번 육계인 순회 교육은 11월 29일 경북 안동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들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양계협회는 더이상 교육을 진행하기에 부리가 있다고 판단, 경북 상주를 포함한 충청도, 제주도의 교육일정을 부기한 연기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재발 방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올해 초 두 차례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깊은 시름과 함께 시작된 2010년 경인년은 새해를 한 달 남겨두고 또다시 구제역이라는 악몽을 가져다주었다. 현재 경상북도 일대에서 32건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는 금년 발생 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에서 발견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는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지난 10월말 일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 검출에 이어 가금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이달 국내 야생조류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발생 건수가 4배까지 증가하는 등 동남아국가에서도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지역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방역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 발생 방지 및 국내 청정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가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금농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의지 뿐만 아니라, 다음의 기본적인 방역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첫째, 가금농가는 모든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소독 및 농장의 주기적인 소독을 통하여 열 번의 치료보다 한 번의 예방조치가 보다 효과적임을 유념하여 자율적인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 소유자나 관리자도 외출 후 귀가시 옷을 갈아입고 축사에 출입할 때는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장화 및 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축산농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농장의 위생과 소독 등 방역관리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옷이나 신발 및 개인 휴대품을 세척·소독하고 축산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소각하여 처리한다. 농장에서 착용할 작업복과 장화를 따로 지급하여 농장 근무 시 지켜야 할 방역관리사항을 숙지시켜야 한다.

셋째,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치워 야생조류 등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조류 및 야생동물(쥐·고양이)이 축사·분뇨처리장내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으로 철저히 차단한다. 또한, 주기적인 살



주이석 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충·구서(쥐잡기) 및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도 반드시 일정구역에 가두어 농장내의 가축전염 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넷째, 철새 도래지, 가축시장·도계장 등 가금관련 시설 및 농장의 방문을 피하고, 일본·중국·베트남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이나 축산 관련 시설의 방문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나라에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공항내 겸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최소한 5일 이상은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한다.

다섯째, 매일 사육가금의 상태를 관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특이 의심 증상(발병초기 침울·졸음, 안면부 심한 부종·괴사, 닭벼슬 출혈 및 다발성 괴사, 폐사 등)을 가진 가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국번 없이 1588-4060 또는 1588-9060)하여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내 과거 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 철새 도래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에는 특별 방역 대책기간이 훨씬 지난 4월에 HPAI가 발생됨에 따라 2008년 7월 22일부터 AI 유입여부를 조기에 검색하여 방역관리 할 수 있는 ‘AI 상시예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농가의 신고에 의존해온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은 철새 및 그 분변, 감염되어 전파요인이 되는 오리 농장, 재래시장, 기타 가금류 검사 등 경로별로 연중 상시 예찰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예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고병원성으로 변이 가능한 H5나 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도 방역조치를 취하여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탐지견을 투입하여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을 집중 검색, 입국자에 대한 발판 소독 실시 및 애완조류 등에 대한 밀수 단속 등 공·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역당국의 방역관리만으로는 국가 재난형 질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 단위의 소독 등 자율적인 차단방역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질병이 그러하듯 조류인플루엔자도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농가의 차단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다면 언제 다시 이 무서운 재앙이 시작될지 모른다. 나 하나로 인하여 나와 내 이웃 나아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되겠다.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농가 단위의 자율적인 차단 방역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 하에 이루어진다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설사 그 위협이 현실이 된다 하여도 그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2010/12/9

“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농가 단위의 자율적인 차단 방역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 하에 이루어진다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설사 그 위협이 현실이 된다 하여도 그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축산농가에서 지켜야 할 일



▲ 차단방역 : 출입자 · 출입차량 철저히 소독



▲ 야생조류 출입차단 : 문단속 그물망 설치



▲ 농장소독 : 철저한 소독, 살충과 쥐잡기



▲ 발생국 여행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2~3회/주 축사와 주변 소독 철저

야생동물의 가금류 접촉방지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의 야생조류 침입 방지
그물망 설치, 창문 닫음
- 사육농장 주변 및 경계에 생식희 도포
-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 제거 등 청결 유지
- 쥐 및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 철새도래지 ·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자제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지역) 방문 금지

■ 부득이하게 여행한 경우 신발세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후 귀가

농장차단방역 질병유입 방지

- 농장 출입구는 1개소는 제한하고 출입 통제
- 농장출입 사람 · 차량은 전문약세로 소독 철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장 · 행사장 · 모임 등
출입금지
- 발생지역 방문한 사람은 2주 이상 농장출입 금지

육계자조금 성공 전제조건은 무임승차를 없애는 것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장관수 주임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이다. 100만원을 흐가하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이동전화 송수신 기능 외에도 인터넷, 뉴스검색, 게임, 내비게이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필방미인' 스마트폰이라도 그 사용법이나 가치를 모르면 그냥 단순한 전화기에 불과하다. 무궁무진한 기능을 100% 활용하려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육계자조금사업 또한 스마트폰과 비슷하다. 기능은 뛰어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자조금사업은 제도적으로 농가가 원하지 않는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다. 육계자조금사업은 정부나 축산단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농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만든 제도이다. 지역 육계농가들의 대표인 대의원이 해당 지역 농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대의원간에 협의하여 모든 육계자조금사업이 시행된다. 육계자조금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대표인 대의원과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및 외부인사(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학계 등)의 승인이 있어야 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조금 사무국은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각 축산단체장과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식품부의 감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선 현재 자조금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자조금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자조금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육계자조금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육계산업은 이미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 즉 자조금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닌 못하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다. 자조금은 농가들이 주체가 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다. 미국에서도 못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 자조금사업은 전국의 육계를 키우는 육계농가 여러분의 자금을 모아 전국 육계농가 분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육계자조금사업은 내·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조금에 대한 육계농가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거출률이 높지 못한 점이 내적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 외적으로는 각 축산단체들의 의견 불일치로 육계자조금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절대 무임승차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조금사업은 전국의 육계를 키우는 육계농가 여러분의 자금을 모아 전국 육계농가 분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 축종 중 한우, 양돈 자조금의 경우 매년 거출금액이 증가되고 있고 농가의 거출률도 100%에 가깝게 조성되고 있다. 낙농자조금의 경우 육계자조금과 비슷하게 원유를 회사에 전적으로 납품하는 구조이지만 낙농산업도 자조금은 농가에게서 거출하고 있다. 이들 자조금이 구심점이 되어 농가의 수익을 간접적으로 보존해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타축종의 농가는 자조금사업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육계자조금 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고 육계산업 전체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는 힘들겠지만, 육계자조금사업은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농가교육과 생산자의 정책 형성의 참여가 진행되면 산업의 장기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0년 유픽자조금 납부실적 (2010년 12월 22일 현재)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남천우	207,000	09년 8월	배귀자	73,470	10년 7월	대구	113,158	10년 2월	박창률	872,50	10년 6월	김익선	918,78	10년 10월	장현호	110,850	10년 1월		
최은숙	476,200	09년 8월	이생구	178,020	10년 7월	김조광	22,998	10년 2월	소명재	934,32	10년 6월	비유경	101,775	10년 10월	전제희1	35,130	10년 1월		
최병환	271,950	09년 8월	장재기	71,730	10년 7월	황봉서	43,017	10년 2월	유승목	106,440	10년 6월	오정길	110,571	10년 10월	전제희2	119,640	10년 1월		
이생구	274,000	09년 9월	김병오	132,540	10년 8월	조이종	30,552	10년 2월	이영재	85,341	10년 6월	비체민	128,823	10년 10월	정경화	855,50	10년 1월		
김길태	111,300	09년 9월	박상천	59,940	10년 8월	신금호	45,576	10년 2월	조영석	121,566	10년 7월	조병기	86,985	10년 10월	정길영	816,50	10년 1월		
남천우	205,700	09년 9월	최희완	105,090	10년 8월	오해진	39,966	10년 2월	비봉석	311,10	10년 7월	박창우	115,215	10년 10월	정덕영	626,40	10년 1월		
최은숙	480,050	09년 9월	김종일	107,920	10년 8월	이영재	338,243	10년 2월	황봉서	43,320	10년 7월	이준기	793,41	10년 10월	정연홍	191,610	10년 1월		
배귀자	117,100	09년 10월	김종일	59,340	10년 9월	김현우	190,577	10년 2월	박유경	86,228	10년 2월	유승목	102,963	10년 10월	정영화	111,830	10년 1월		
김지영	276,650	09년 10월	이원신	112,020	10년 9월	이원신	166,950	10년 8월	조병기	91,254	10년 2월	우정길	127,695	10년 10월	정용택	177,000	10년 1월		
김원상	331,400	09년 10월	송명석	144,200	09년 11월	김용근	60,180	10년 8월	박경애	58,038	10년 2월	임운구	83,901	10년 7월	정종훈	861,60	10년 1월		
이생구	306,600	09년 11월	김길태	123,750	09년 11월	김용근	79,080	10년 8월	김혜연	174,45	10년 3월	오제진	26,288	10년 7월	장진철	143,250	10년 1월		
남천우	223,850	09년 11월	최병환	18,520	10년 8월	오세진	125,820	10년 8월	김광수	69,579	10년 7월	공영미	105,882	10년 1월	정현구	659,70	10년 1월		
신용민	159,729	09년 11월	최희완	102,050	09년 11월	박봉석	33,450	10년 3월	조이종	24,582	10년 7월	과기준	189,00	10년 1월	조한용	574,20	10년 1월		
최은숙	502,050	09년 11월	김경선	161,550	09년 11월	오세진	125,747	10년 8월	안병수	24,488	10년 3월	구광희	99,330	10년 1월	채홍현	861,60	10년 1월		
김경선	161,550	09년 11월	배동원	167,550	09년 12월	김준수	135,770	10년 8월	김두수	14,202	10년 3월	구자성	116,520	10년 1월	천병진	137,970	10년 1월		
배동원	167,550	09년 12월	최병환	310,125	09년 12월	신용민	90,249	10년 8월	춘천	147,816	10년 3월	구제뇌	92,310	10년 1월	하복율	156,60	10년 1월		
이재학	178,425	09년 12월	이생구	306,600	09년 11월	윤병준	181,830	10년 8월	신금호	158,183	10년 3월	오제진	18,098	10년 7월	한정도	137,820	10년 1월		
송명석	139,900	10년 1월	김길태	355,52	10년 2월	김종일	181,830	10년 8월	김원기	30,600	10년 3월	한종명	106,734	10년 7월	호종삼	734,70	10년 1월		
이생구	302,850	10년 3월	김원상	321,020	09년 10월	정덕재	63,870	10년 8월	김광수	24,150	10년 3월	김간수	136,890	10년 1월	홍충기	204,570	10년 1월		
신용민	113,610	10년 1월	김경선	96,060	10년 2월	정성호	123,120	10년 9월	정하영	24,153	10년 3월	감명석	213,570	10년 1월	황승용	939,60	10년 1월		
최은숙	257,730	10년 3월	김길태	190,50	10년 2월	정성호	90,480	10년 9월	대구	63,696	10년 3월	정원우	22,930	10년 1월	화원위	22,930	10년 1월		
이재학	109,195	10년 3월	김필성	194,580	10년 3월	이생구	144,03	10년 9월	이영재	272,361	10년 3월	이준기	81,788	10년 3월	기순우	123,360	10년 2월		
김필성	194,580	10년 3월	남천우	140,200	10년 3월	김필성	116,307	10년 9월	이준기	63,870	10년 8월	박경기	207,540	10년 1월	권영팔	202,940	10년 2월		
남천우	140,200	10년 3월	배귀자	97,410	10년 3월	최희성	276,270	10년 3월	박종성	160,917	10년 3월	김미자	186,00	10년 1월	권영한	110,460	10년 2월		
최희성	257,730	10년 3월	최희성	102,195	10년 3월	김길오	70,149	10년 9월	정성호	83,286	10년 4월	김봉숙	118,710	10년 1월	권오균	719,40	10년 2월		
이재학	109,195	10년 3월	김필성	194,580	10년 3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정성호	90,480	10년 9월	박제면	125,711	10년 5월	권오경	902,40	10년 2월		
김필성	194,580	10년 3월	남천우	140,200	10년 3월	이영재	144,03	10년 9월	이영재	83,280	10년 4월	박상윤	285,570	10년 1월	권윤희	104,400	10년 2월		
남천우	140,200	10년 3월	배귀자	97,410	10년 3월	최희성	276,270	10년 3월	이영재	75,735	10년 4월	오정길	114,561	10년 8월	권혁신	101,220	10년 2월		
최희성	257,730	10년 3월	최희성	102,195	10년 3월	김길오	70,149	10년 9월	조병기	83,286	10년 4월	김중식	125,200	10년 1월	권희숙	144,540	10년 2월		
이재학	109,195	10년 3월	김필성	194,580	10년 3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박병호	110,754	10년 4월	김중기	130,470	10년 1월	김동관	30,930	10년 2월		
김필성	194,580	10년 3월	남천우	140,200	10년 3월	이영재	144,03	10년 9월	황봉서	143,919	10년 4월	김승우	116,820	10년 2월	김세현	963,90	10년 2월		
남천우	140,200	10년 3월	배귀자	97,410	10년 3월	최희성	276,270	10년 3월	김경선	102,555	10년 9월	오제진	93,930	10년 1월	김인숙	134,40	10년 2월		
최희성	257,730	10년 3월	최희성	102,195	10년 3월	김길오	70,149	10년 9월	김경선	102,555	10년 9월	이제술	285,959	10년 8월	김정희2	16,720	10년 2월		
이재학	109,195	10년 3월	김필성	194,580	10년 3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광수	28,299	10년 4월	김경수	104,130	10년 2월	김영섭	152,540	10년 2월		
김필성	194,580	10년 3월	남천우	140,200	10년 4월	이영재	139,880	10년 10월	김경선	48,213	10년 4월	김경수	116,820	10년 2월	김우진	104,400	10년 2월		
남천우	140,200	10년 4월	배귀자	84,690	10년 7월	오세진	44,888	10년 10월	김광수	156,44	10년 9월	김경수	43,701	10년 9월	신인수	14,880	10년 2월		
배동원	925,50	10년 4월	김필성	130,380	10년 5월	김준수	157,770	10년 10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김경수	147,360	10년 2월	안영래	115,290	10년 2월		
김필성	130,380	10년 5월	정경숙	228,879	10년 7월	박병호	112,890	10년 10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김경수	139,50	10년 1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정경숙	228,879	10년 7월	최희성	283,020	10년 6월	최희성	105,090	10년 10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김경수	139,50	10년 1월	신인숙	81,150	10년 2월		
최희성	283,020	10년 6월	이영재	151,740	10년 6월	김경선	104,488	10년 10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김경수	139,50	10년 1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이영재	151,740	10년 6월	신용민	109,795	10년 6월	오세진	72,728	10년 10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김경수	139,50	10년 1월	신인숙	81,150	10년 2월		
신용민	109,795	10년 6월	배귀자	70,170	10년 7월	이준기	63,420	10년 10월	박봉석	135,929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배귀자	70,170	10년 7월	이생구	121,880	10년 4월	이준기	131,310	10년 9월	황봉서	29,795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신인숙	81,150	10년 2월		
이생구	121,880	10년 4월	김경선	109,480	10년 6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9,480	10년 6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신인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신인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신인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신인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신인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신인숙	81,150	10년 2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106,570	10년 9월	김경선	31,46	10년 5월	김경선	134,34	10년 5월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정세종	82230	10년 2월		전계희1	66570	10년 3월		정경화	97560	10년 4월		이병일	32040	10년 5월		순정기	85440	10년 6월
정영숙1	68460	10년 2월		전계희2	55920	10년 3월		정길종	86130	10년 4월		이복	110570	10년 5월		신인수	139710	10년 6월
정한상	107950	10년 2월		전동석	129390	10년 3월		정덕영	59520	10년 4월		이상정	382116	10년 5월		안경순	173280	10년 6월
정한용	41250	10년 2월		정길영	59100	10년 3월		정상윤	4200	10년 4월		이성희	151440	10년 5월		안상기	117120	10년 6월
정호진	157550	10년 2월		정상윤	208485	10년 3월		정세종	52710	10년 4월		이영희	65070	10년 5월		안숙희	114980	10년 6월
정회자	125660	10년 2월		정연홍	188580	10년 3월		정수종	178490	10년 4월		이유준	98670	10년 5월		안우현	178500	10년 6월
조복평	5400	10년 2월		정영범	188610	10년 3월		정영환	117380	10년 4월		이재만	32460	10년 5월		안재숙	71430	10년 6월
조운식	40200	10년 2월		정용진	39900	10년 3월		정용순	159100	10년 4월		이재학	122640	10년 5월		양우호	42630	10년 6월
조현성	69540	10년 2월		정종훈	70710	10년 3월		정웅태	67230	10년 4월		이하로	145950	10년 5월		양복순	177960	10년 6월
최기수	90120	10년 2월		정한상	101160	10년 3월		정한용	208310	10년 4월		임근수	95970	10년 5월		연구호	89955	10년 6월
최병우	137460	10년 2월		조승희	229500	10년 3월		정현구	62940	10년 4월		임병동	111420	10년 5월		오인현	70980	10년 6월
최희자	102500	10년 2월		조현주	296202	10년 3월		정호진	148280	10년 4월		정현숙	131370	10년 5월		박용성	134180	10년 6월
최원숙	183400	10년 2월		천병진	132950	10년 3월		정회자	125160	10년 4월		장경호	112620	10년 5월		우희준	133320	10년 6월
한경택	107950	10년 2월		최기수	87240	10년 3월		조운식	42930	10년 4월		정병우	122880	10년 5월		유정관	150510	10년 6월
한서용	108980	10년 2월		최원술	174900	10년 3월		조현성	65700	10년 4월		정숙희	71310	10년 5월		유성종	57960	10년 6월
한승우	111390	10년 2월		표복숙	93720	10년 3월		제현호	83520	10년 4월		정연홍	88320	10년 5월		이간선	56730	10년 6월
한용옥	132360	10년 2월		호종삼	119910	10년 3월		최기수	79740	10년 4월		정용태	209130	10년 5월		이구운	147300	10년 6월
허성자1	106380	10년 2월		홍성우	103560	10년 3월		최병우	71310	10년 4월		정종운	84130	10년 5월		이금육	67500	10년 6월
허창현	87750	10년 2월		홍종기	103500	10년 3월		최영자	95280	10년 4월		조승희	110160	10년 5월		이기환	137300	10년 6월
홍중기	102100	10년 2월		황유동	124450	10년 3월		최원수	56610	10년 4월		조현주	300660	10년 5월		이덕신	91590	10년 6월
황유동	73260	10년 2월		화이팅	249750	10년 3월		허복운	67590	10년 4월		천병진	136320	10년 5월		천운임	75840	10년 6월
기순우	63960	10년 3월		강진경	141480	10년 4월		한경택	101820	10년 4월		화이팅	101520	10년 5월		최근수	65400	10년 6월
곽기준	102360	10년 3월		고회정	122220	10년 4월		한서용	87720	10년 4월		한승우	105182	10년 4월		최길영	119190	10년 5월
구광희	80400	10년 3월		공영미	115644	10년 4월		한용현	126500	10년 4월		한용현	126500	10년 5월		최병우	68850	10년 6월
구본영	77340	10년 3월		관영관	214800	10년 4월		한인영	151940	10년 4월		최원술	179490	10년 5월		송하경	99930	10년 6월
구제노	89520	10년 3월		관영한	118260	10년 4월		한인영	151940	10년 5월		표복숙	103800	10년 6월		신미순	128490	10년 7월
관영학	96120	10년 3월		권우근	65940	10년 4월		허창현	80490	10년 4월		한용현	121720	10년 5월		이재형	141330	10년 6월
김일섭	115220	10년 3월		권옥희	192840	10년 4월		홍미숙	72000	10년 4월		기수우	104550	10년 5월		이재환	150020	10년 6월
김경선	80190	10년 3월		권혁선	153150	10년 4월		홍석희	104480	10년 5월		호종삼	112220	10년 5월		이경규	129450	10년 6월
김광석	208710	10년 3월		김진수	180980	10년 4월		강남희	133980	10년 5월		홍미숙	125450	10년 6월		이현호	89700	10년 7월
김길래	140340	10년 3월		김동관	91110	10년 4월		파기준	87420	10년 5월		홍성임	121860	10년 6월		임운재	208380	10년 7월
김갑구	73500	10년 3월		김민성	107100	10년 4월		권영학	85840	10년 5월		화이팅	106350	10년 6월		장재원	97200	10년 7월
김동구	250950	10년 3월		김진우	150360	10년 4월		김진우	108300	10년 5월		기수우	27900	10년 6월		전동석	172380	10년 7월
김병석	26310	10년 3월		김미자	82140	10년 4월		김광석	206880	10년 5월		강진철	128350	10년 6월		정경화	94080	10년 7월
김봉숙	103360	10년 3월		김상환	222300	10년 4월		김길래	142920	10년 5월		고회정	148860	10년 6월		정길영	99180	10년 7월
김승기	14890	10년 3월		김세현	88800	10년 4월		김남구	78660	10년 5월		권옥희	19340	10년 6월		오세광	55590	10년 7월
김경태	127170	10년 3월		김신호	78900	10년 4월		김덕근	289470	10년 5월		구광희	91500	10년 6월		오종성	124740	10년 7월
김화룡	73620	10년 3월		김영선	149760	10년 4월		김동국	24470	10년 5월		김회자	208760	10년 6월		유문조	207210	10년 7월
니승호	111100	10년 3월		김영숙	153900	10년 4월		김영우	128640	10년 5월		구제노	125260	10년 6월		정승종	87600	10년 7월
류대현	116960	10년 3월		김우현	135350	10년 4월		김진수	194070	10년 5월		구제노1	95580	10년 6월		전예원	119520	10년 7월
박동분1	122400	10년 3월		김용수	91620	10년 4월		류대현	62010	10년 5월		정기운	196530	10년 6월		유영희	73650	10년 7월
박보경	110130	10년 3월		김인숙1	121950	10년 4월		김정근	189000	10년 5월		권오균	68640	10년 6월		유재하	83160	10년 7월
박시옹	94050	10년 3월		김증식	89850	10년 4월		김진웅	179490	10년 5월		권옥희	146124	10년 6월		윤미자	95040	10년 7월
박정희	138360	10년 3월		김종호	104100	10년 4월		김태규	185790	10년 5월		구광희	325100	10년 6월		윤종영	83970	10년 7월
박호규	6100	10년 3월		서영학	120100	10년 4월		김진우	97440	10년 5월		김회자	20360	10년 6월		유성종	87600	10년 7월
박홍진	12240	10년 3월		송성모	35340	10년 4월		류대현	65100	10년 5월		조은미	192360	10년 6월		전예원	201300	10년 7월
백우희	84780	10년 3월		손정미	109200	10년 4월		박경배	146480	10년 5월		김정근	189000	10년 6월		유영희	73650	10년 7월
백종열	112970	10년 3월		신운실	106140	10년 4월		박지관	89910	10년 5월		김진웅	179490	10년 6월		신인수	128490	10년 7월
변인숙	125060	10년 3월		신인수	152430	10년 4월		박진웅	97200	10년 5월		김현숙	135720	10년 6월		신영희	141330	10년 7월
송정목	73430	10년 3월		인경정	120700	10년 4월		백종태	157510	10년 5월		김영우	181320	10년 6월		안경순	121580	10년 7월
서판근	3000	10년 3월		민이식	107100	10년 4월		백종태	157510	10년 5월		김진우	117180	10년 6월		이유준	131200	10년 7월
서훈복	140510	10년 3월		손정미	109200	10년 4월		박시옹	16950	10년 5월		김상화	220410	10년 6월		이상석	128490	10년 7월
순동분	115580	10년 3월		신인수	152430	10년 4월		박영우	141290	10년 5월		김세현	131460	10년 6월		이상정	135350	10년 7월
손현동	182460	10년 3월		인경정	120700	10년 4월		박영우	142830	10년 5월		김승기	107790	10년 6월		이영희	65310	10년 7월
송영태	107700	10년 3월		이재우	155890	10년 4월		송정태	166390	10년 5월		김영렬	101460	10년 6월		이용균	267210	10년 7월
신미수	144810	10년 3월		이구운	54120	10년 4월		송송태	166390	10년 5월		김영렬	132840	10년 6월		이원의	30960	10년 7월
신순균	90930	10년 3월		이금육	141420	10년 4월		송송태	166390	10년 5월		김영숙	154830	10년 6월		이원의2	44100	10년 7월
안우현	171300	10년 3월		이금우	140748	10년 4월		송송태	166390	10년 5월		김영우	130320	10년 6월		이유준	121580	10년 7월
여성경	116180	10년 3월		이금우	54580	10년 4월		신미순	141720	10년 5월		김진우	117180	10년 6월		이재학	125280	10년 7월
여상희	116190	10년 3월		이금우	54120	10년 4월		신미순	141720	10년 5월		김영우	136630	10년 6월		이재학	125280	10년 7월
여상희	116190	10년 3월		여성원	138910	10년 4월		신미순	141720	10년 5월		김진우	117180	10년 6월		이재학	125280	10년 7월
여운조	79320	10년 3월		여성원	138910	10년 4월		신미순	141720	10년 5월		김영우	136630	10년 6월		이재학	125280	10년 7월
유명곤	155370	10년 3월		여운조	284700	10년 4월		여성원	138910	10년 5월		김진우	117180	10년 6월		이재학	125280	10년 7월
유민조	134700	10년 3월		여운조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체 리 부 로	체경병	67200	10년 7월	도계장	이준준2	86280	10년 4월	이승우	138,540	10년 8월	김병곤	8,854	10년 2월	김병곤	13658	10년 7월	선기동	65040	10년 6월
	천병진	113,910	10년 7월		황재웅	89,160	10년 4월	이승자	55,920	10년 8월	정윤호	20,661	10년 2월	신효정	42807	10년 8월	김순연	79980	10년 6월
	천수인	62400	10년 7월		박종홍	123,060	10년 7월	정규태	68,460	10년 8월	조영진	24,348	10년 3월	정윤호	26,748	10년 8월	강호원	91855	10년 6월
	최근수	85380	10년 7월		방진우	116,760	10년 5월	김진희	69,690	10년 8월	신상준	9,438	10년 3월	금혜정	38,717	10년 8월	이태근	117,705	10년 6월
	최기수	83250	10년 7월		박준성	204,810	10년 7월	이상진	112,050	10년 8월	양진황	18,573	10년 3월	염광선	20,664	10년 9월	강양원	83250	10년 6월
	최길영	172,860	10년 7월		배동원	91710	10년 5월	정명준	123,870	10년 8월	이문호	25,119	10년 3월	강휘부	16,593	10년 9월	노정설	137,850	10년 6월
	최영자	100,440	10년 7월		유기현	139,820	10년 5월	유영복	174,380	10년 8월	이동수	30,735	10년 3월	윤종숙	30,921	10년 9월	이항숙	50940	10년 6월
	최원술	150,780	10년 7월		육정이	49740	10년 5월	유지호	53040	10년 8월	유종길	7,995	10년 3월	정재하	16,269	10년 9월	허동식	157,950	10년 6월
	표봉숙	101,790	10년 7월		이남수	53310	10년 8월	이남수	53310	10년 8월	김정희	114,933	10년 3월	감상예	69,978	10년 9월	박재규	81195	10년 6월
	허종숙	146,715	10년 7월		홍순태	121,140	10년 5월	홍순태	121,140	10년 8월	전영자	28347	10년 3월	유효구	95,292	10년 9월	한학회	90000	10년 6월
한 용 현	한용현	97,920	10년 7월	매 산	정경환	101,700	10년 7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휘부	44,802	10년 3월	고장봉	68,976	10년 9월	박병철	98100	10년 6월
	홍성해	131,244	10년 7월		한기향	204,150	10년 5월	방준성	251,940	10년 9월	박영귀	17,964	10년 3월	송분심	35547	10년 9월	서귀임	194,070	10년 6월
	황유동	178,800	10년 7월		문기환	63,780	10년 5월	오상근	170,700	10년 9월	정윤호	9,123	10년 3월	서연한	54,873	10년 9월	박미석	183,945	10년 6월
	황의원	184,410	10년 7월		박재철	124,410	10년 5월	유기현	119,190	10년 9월	유덕선	24,950	10년 3월	전규현	81,175	10년 6월	전현현	12,570	10년 6월
	김명숙	109,020	09년 12월		유영관	74,250	10년 5월	이남수	69,780	10년 9월	금혜정	45,242	10년 3월	김용관	18,740	10년 6월	김은미	154,080	10년 6월
	방진우	216,000	09년 12월		이강선	118,940	10년 5월	이강선	65,700	10년 9월	손상호	10,695	10년 3월	손상호	22,585	10년 9월	배영순	181,575	10년 6월
	이지범	178,770	09년 12월		이정주	107,370	10년 5월	이정주	99,180	10년 9월	전영자	17,328	10년 4월	윤종숙	30,921	10년 9월	오경숙	86,475	10년 7월
	이준구	250,950	09년 12월		정경환	176,100	10년 5월	정경환	102,690	10년 9월	정윤호	9,123	10년 3월	김관현	10,695	10년 9월	김종경	92,550	10년 7월
	박길중	109,770	09년 12월		김동성	122,370	10년 12월	김동성	123,26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휘부	116,855	10년 7월	김관현	116,855	10년 7월
	김동성	122,370	09년 12월		박종홍	111,990	10년 1월	박종홍	102,690	10년 9월	방준성	251,94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유 기 현	유기현	170,520	10년 1월	매 산	경기현	64,950	10년 7월	유기현	55,33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8월	정윤호	9,123	10년 3월	김정희	114,933	10년 3월
	안평수	237,540	10년 1월		박경실	84,93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8월	유영복	174,38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육평언	55560	10년 1월		박경실	84,93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인진영	84,900	10년 1월		박경실	84,93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정경환	104,490	10년 1월		박경실	84,93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박경실	113,790	10년 1월		유기현	170,520	10년 1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유영관	79,110	10년 1월		유기현	170,520	10년 1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인진영	84,900	10년 1월		유기현	170,520	10년 1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정경환	104,490	10년 1월		유기현	170,520	10년 1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안평수	237,540	10년 1월		유기현	170,520	10년 1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매 산	매 산	매 산	매 산	광 진 식 품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유기현	170,52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유기현	170,52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유기현	170,52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유기현	170,52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유기현	170,52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유기현	170,52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유기현	170,52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유기현	170,52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유기현	170,520	10년 5월	이남수	53310	10년 9월	유영복	174,380	10년 9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김기운	73,170	10년 8월
광 진 식 품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금 계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동 우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금 계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28,850	10년 1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7,370	10년 5월	김기운	10,695	10년 1월	김기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김정윤	10,300	10년 3월		박영기	119,370	10년 7월		김용현	151,665	10년 3월		송관식	195,920	10년 5월	
유태용	202,050	10년 3월		김금숙	227,520	10년 7월		이상철	117,380	10년 3월		김준자	149,130	10년 7월	
장숙희	150,570	10년 3월		박두순	147,780	10년 7월		공정례	141,080	10년 4월		김아순	209,280	10년 7월	
김금숙	24,070	10년 3월		유현만	102,000	10년 7월		구본선	120,660	10년 4월		안은례	118,350	10년 5월	
비종선	202,410	10년 3월		나국주	105,280	10년 7월		김대복	934,20	10년 4월		최정규	117,840	10년 6월	
박상현	12,000	10년 3월		양재일	24,650	10년 7월		김명호	896,40	10년 4월		임태섭	111,900	10년 5월	
박동철	119,360	10년 3월		김이순	189,150	10년 7월		김상진	151,140	10년 4월		최원호	26,100	10년 5월	
미봉준	257,640	10년 3월		장이석	64,450	10년 7월		김우성	135,390	10년 4월		황자남	124,360	10년 5월	
니국주	114,570	10년 3월		마기영	93,060	10년 7월		김종례	198,710	10년 4월		강공식	174,00	10년 6월	
김정애	91,580	10년 4월		박동철	105,750	10년 7월		김한영	257,370	10년 4월		차영하	100,350	10년 6월	
정상훈	121,740	10년 4월		정상훈	224,400	10년 7월		동세진	363,00	10년 4월		최원길	315,60	10년 6월	
김학준	102,120	10년 4월		미봉준	198,180	10년 7월		문정필	28,400	10년 4월		정대근	159,00	10년 6월	
장숙희	13,170	10년 4월		서점주	162,600	10년 7월		박구덕	16,780	10년 4월		김동수	67,650	10년 4월	
서점수	90,420	10년 4월		김경애	87,900	10년 7월		박현경	15,180	10년 4월		정수현	151,200	10년 6월	
김정윤	122,640	10년 4월		김학준	92,160	10년 7월		신경숙	16,740	10년 4월		홍관표	142,500	10년 6월	
한용문	123,317	10년 4월		김경윤	129,380	10년 7월		마기영	93,060	10년 7월		이정환	143,880	10년 6월	
이준배	37,125	10년 4월		설동진	15,660	10년 7월		박현경	16,780	10년 4월					
한용운	121,393	10년 5월		정종식	195,845	10년 7월		신기숙	91,680	10년 4월					
정금일	167,730	10년 5월		박상현	110,570	10년 7월		장덕기	83,610	10년 4월					
이준배	86,625	10년 5월		정재원	135,540	10년 2월		정재원	32,850	10년 4월					
설동진	224,250	10년 5월		구본선	117,360	10년 2월		체선회	127,800	10년 4월					
정금일	218,520	10년 5월		김대복	98,100	10년 2월		최회자	18,230	10년 4월					
박중선	191,880	10년 5월		김동호	82,740	10년 2월		황인무	151,580	10년 4월					
니국주	133,260	10년 5월		김명호	151,260	10년 2월		신금호	32,440	10년 4월					
김금숙	242,830	10년 5월		김상진	145,880	10년 2월		오봉세	108,840	10년 4월					
미봉준	268,350	10년 5월		김윤성	139,210	10년 2월		지구환	222,900	10년 4월					
미기영	107,800	10년 5월		김인오	97,920	10년 2월		곽광도	104,850	10년 5월					
박상현	133,500	10년 5월		김종례	198,230	10년 2월		김순태	151,740	10년 5월					
박동철	111,870	10년 5월		김현경	267,990	10년 2월		김용현	151,225	10년 5월					
정상훈	118,530	10년 6월		박구덕	176,910	10년 2월		김현경	168,340	10년 2월					
서점주	160,500	10년 6월		박왕준	115,200	10년 2월		김인오	144,000	10년 5월					
김학준	101,070	10년 6월		박현경	142,110	10년 2월		김주민	108,270	10년 5월					
김정애	84,080	10년 6월		신금호	170,775	10년 2월		박종열	91,320	10년 3월					
정중식	223,650	10년 6월		신선희	151,380	10년 2월		오봉세	210,835	10년 5월					
김중면	729,33	10년 6월		인중규	50,665	10년 2월		오인희	729,00	10년 5월					
오을선	187,220	10년 6월		오인희	60,390	10년 2월		이갑표	127,520	10년 5월					
이동관	123,810	10년 6월		이강식	88,290	10년 2월		이계표	16,840	10년 5월					
곽상연	151,880	10년 6월		이문자	246,150	10년 2월		이동섭	48,750	10년 5월					
이민선	164,830	10년 6월		정덕기	91,800	10년 2월		이문자	158,120	10년 5월					
설동진	188,490	10년 6월		체선회	120,980	10년 2월		이상철	114,000	10년 4월					
한용운	279,570	10년 6월		최회자	174,510	10년 2월		이종승	119,400	10년 5월					
정금일	158,910	10년 6월		파영도	102,420	10년 3월		정재원	53,100	10년 4월					
김정윤	117,800	10년 6월		김준태	165,450	10년 3월		정진재	20,400	10년 5월					
박상현	92,700	10년 6월		김인오	47,040	10년 3월		지중근	77,440	10년 5월					
성술백	70,093	10년 6월		김준민	104,370	10년 3월		율대심	120,250	10년 1월					
정금일	204,390	10년 6월		이경학	100,000	10년 3월		이경학	100,000	10년 1월					
여창선	196,170	10년 6월		박종열	83,190	10년 3월		정진재	20,400	10년 5월					
비종선	194,490	10년 6월		오인희	31,770	10년 3월		김영숙	171,500	10년 1월					
조진택	269,41	10년 6월		이갑표	134,400	10년 3월		김의겸	68,400	10년 1월					
이준배	78,908	10년 6월		이계표	178,944	10년 3월		이경학	37,770	10년 2월					
조진택	955,19	10년 7월		이동섭	105,920	10년 3월		강공식	21,250	10년 3월					
정숙희	249,060	10년 7월		이종승	42,000	10년 3월		김의겸	153,480	10년 3월					
이준배	463,42	10년 7월		이종희	147,390	10년 3월		인영기	1,082,600	10년 6월					
박상현	110,540	10년 7월		정진재	173,280	10년 3월		이경학	43,920	10년 4월					
민감식	88,20	10년 7월		김경제	22,050	10년 5월		송연호	1,922,200	10년 6월					
				박세원	120,180	10년 5월		김경제	188,000	10년 6월					
• 육계자조금 송금계좌 : 농협 301-0017-6070-01, • 예금주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 문의 : 02-585-9974				박세원	88,660	10년 3월		송연호	188,000	10년 6월					

자조금 납부는 육계산업의 발전에 쓰여집니다.

자조금 납부에 참여해주신 농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계의무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육계자조금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육계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육계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매품 / 제2권 제12호 통권14호 / 등록번호 서초 라 00269 / 발행 2010년 12월 15일 /

발행인 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 인쇄처 삼원정판사 / 편집 인포아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Tel : (02)585-9974 Fax : (02)585-3548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닭고기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국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닭고기 외식업체 및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식품부 · 소비자시민모임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사단
법인

대한양계협회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